

# 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

2018년 8월호

## 1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

- 가.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
- 나.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

## 2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
- 나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
- 다.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

## 1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

- 가.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
- 나.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

## 1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\*

### 가.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(2018/7/12 제정·시행)

#### 1) 제정 이유

- 「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, 특정금융거래보고법) 11조 및 동법 시행령 15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대한 검사 및 제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검사수탁기관이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, 제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
  -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금융회사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, 금융정보분석원(FIU)의 검사 및 일부 제재업무를 업권에 따라 금감원, 상호금융중앙회 등 11개 기관에 위탁
    - 금융회사에 대한 기관경고·기관주의 제재, 임직원에 대한 문책경고·감봉·견책·주의 등의 조치 요구권을 위탁(금융회사에 대한 시정명령,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, 직무정지는 비위탁)
  -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은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이 검사절차,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(15조 4항)
  -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이 제정됨으로써 11개의 검사수탁기관의 검사절차 및 제재권 행사에 적용되는 기준의 일관성이 확보되고, 제재절차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
    - 검수수탁기관: 금감원, 농협, 수협, 신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 중앙회, 행안부, 과기부, 중기부, 관세청 등

#### 2) 주요 내용

- 검사업무의 운영원칙 등 (4조)
  - 동 규정에 따른 검사는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행위 등을 방지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함
- 검사운영 절차 (5조 내지 13조)
  - 검사원의 권한 및 의무, 검사의 사전통지(7일전), 자료제출 요구, 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등 검사수탁기관이 검사 업무를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절차를 정함

\*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- 감사원의 권한은 금융회사등의 관계자에 대한 출석·진술 요구, 금융거래기록 등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등

## □ 제재기준 (14조 내지 22조)

- 특정금융거래보고법 11조에 규정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별 부과사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, 제재의 가중·감면 사유를 정함

## □ 제재절차 개선 (23조 내지 28조)

-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감사수탁기관의 장이 제재를 하는 경우에는 제재의 내용을 사전통지하고,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함
- 과태료, 시정명령 등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 자문기구로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함
  - 심의위원회는 10인 이내의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총 14명 이내로 구성(개의를 위해서는 민간위원의 경우 2인 이상 출석이 필요)

## □ 감사수탁기관 협의회 (29조)

-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감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감사수탁기관의 감사업무 담당 임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음

### 〈자금세탁방지 감사수탁기관 협의회〉

자금세탁방지 감사수탁기관 협의회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감독체계를 자금세탁 위험에 기반 하여 정비

- 자금세탁방지 제도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독체계를 평가-검사-교육(개선)이 연계·순환되는 체계로 개편
- 제도운영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취약부문 현장 지도점검 확대 실시

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관련 평가·검사·교육 운영을 개선할 계획

- (평가)종합이행평가 외에 금융회사의 자가위험평가를 통한 자금세탁방지 위험관리의 상시화·체계화, 금융회사의 자가위험평가 관련 평가지표 조정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

#### [이행평가제도]

- ▶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 종합평가(연1회)  
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충실도 및 검사 결과, 자가위험평가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평가(금융정보분석원 내부평가)
- ▶ 자가위험평가(주기적 시행)  
위험기반접근법에 기반하여 자금세탁방지 제도 이행수준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점검·평가하여 RBA시스템 등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

- (검사) FIU의 감독정책 및 평가결과 취약점 개선을 최우선 고려하여 검사하도록 수탁기관에 당부하고, 수탁기관은 리스크 경감 노력 및 위규사항에 대한 엄정한 제재 및 조치 적용
- (교육)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 효과 제고 위해 지속적인 자금세탁방지 교육체계 개편

## 나.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(2018/7/12 개정·시행<sup>1)</sup>)

### 1) 개정 이유

-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의 개정 및 「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」의 제정에 따라, 「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」 상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, 상위 법령과 상치되는 용어를 개정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- 일부 금융회사에 대한 내부통제의무 면제 규정 삭제 (18조 1항)
  - 내부통제의무 면제대상 금융회사를 감독규정에 규정하도록 한 시행령 상 위임규정이 개정(삭제)됨에 따라 해당 감독규정 조항도 삭제
- 검사 관련 「금융위원회 감사규정」 준용규정 삭제 (25조)
  -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절차 등을 규정한 검사 및 제재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검사 절차와 관련하여 「금융위원회 감사규정」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
- 상위 법령과의 용어 통일 등 (2조 1항·2항, 5조, 22조 등)
  - ‘금융기관등’을 상위 법령에서 사용하는 ‘금융회사등’으로 용어 수정 등

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fi.re.kr)

1) 다만, 제18조제1항·제2항의 개정조항은 2018년 8월 28일, 제25조의 개정조항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

## 2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
- 나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
- 다.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

## 2. 한국거래소 규정\*

### 가.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(2018/7/10 개정·2018/7/11 시행)

#### 1) 개정 이유

- 불성실공시의 적용예외에 대한 세부기준 위임 근거 및 공시 관련 매매거래정지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함

#### 2) 주요 내용

- 불성실공시의 적용예외 세부기준 위임 근거 명확화 (11조 2항)
- 포괄적 주식교환·이전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기준 명확화 (16조 1항 6호)
  - 포괄적 주식교환·이전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매거래정지 하되, 간이주식교환과 소규모 주식교환은 제외

### 나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(2018/7/17 개정·2018/7/30 시행)

#### 1) 개정 이유

- ETF 발행사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발행사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ETF 상장심사기준을 정비하고자 함

#### 2) 주요 내용

- 해외 현물지수형 ETF의 선물 운용시 제한 개선 (별표2의3)
  - 해외 현물지수 상품의 선물 운용시 선물 95% 편입의무 요건을 삭제하고, 상관계수 및 오차평균 기준을 각각 97% 및 3%로 조정

\* 해당 내용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□ 현물 레버리지 상품의 파생상품위험평가액 한도 조정 (별표2의3)

- 현물지수 레버리지 상품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를 100%로 유지하되, 추가설정시 일시적으로 100%를 초과하는 것은 허용

□ ETF 운용능력 평가점수기준 개선 (별표2의3)

- “상장규모”, “지수형 공모펀드 운용규모”, “상장종목 순자산규모 증감” 등 대형사 위주 항목을 삭제
- LP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, 적극적인 LP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장신청 종목의 LP 평가결과 배점을 상향 조정
- 감점 항목 중 “운용지시내역 통보시한 미준수” 및 “최근 1년 상장기간 2년 이내 종목 상장폐지시” 항목을 삭제하고,
  - “계열회사만 LP업무 수행시” 및 “중요 신고사항 누락” 항목의 감점을 하향 조정(5점 → 3점),
- 신규상장에 필요한 점수를 “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취득”에서 “50점 만점에 20점 이상 취득”으로 변경

평가지표	내 용	배 점
지수형 공모펀드 동일 유형 기초자산 운용 경험 (15점)	현재 운용 중(1년 이상)	15
	현재 운용 중(1년 미만)	10
	경험 없음	5
상장신청 종목 LP 평가결과 (35점)	최근 1년간 평균점수 3.5* 이상	35
	최근 1년간 평균점수 3.0* 이상	15
	최근 1년간 평균점수 3.0* 미만	5
감점	· 최근 1년 PDF 오류(발생건별, 한도 10점)	△1
	· 최근 1년 계열회사만이 LP업무 수행시(종목별)	△3
	· 최근 1년 기초지수산출기준 변경 등 중요 신고사항 누락	△3

주: 1) 평가기준일 : 상장심사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말

2) LP 평가결과는 A는 4점, B는 3점, C는 2점, F는 0점 부여 후 평균점수 산출

## 나.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(2018/7/16 개정·2018/7/17 시행<sup>1)</sup>)

### 1) 개정 이유

- 장외파생상품 청산결제제도 중 결제이행재원 산정 및 관리절차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하여 결제안정성 및 위험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□ 장외파생공동기금 수시조정 기준설정 (13조 3항 및 6항)

- 매일 산출하는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추산액이 현재 장외파생공동기금총적립액에 임계치를 곱한 수치보다 큰 날에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조정을 실시하여 장외파생공동기금의 신뢰수준을 제고

1) 13조 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세칙의 시행일부터 거래소가 임계치 산출을 위한 비율을 별도로 정하는 때까지 같은 조 3항의 임계치는 95%로 함

## 장외파생상품공동기금총적립액 수시조정 실시기준

구분	주요내용
수시조정기준	장외파생상품공동기금총적립추산액 > 장외파생상품공동기금총적립액 × 임계치
장외파생상품공동기금총적립추산액	매영업일 위기상황분석(Stress-testing)을 실시하여 산출된 2개사의 총증거금초과위험상당액에서 거래소 결제적립금을 차감한 금액
임계치(threshold)	1-거래소가 별도로 정한 비율
납부일	장외파생상품공동기금의 조정을 회원에게 통보한 날부터 기산하여 1영업일 이내

### □ 장외파생상품공동기금 적립시한 변경 (13조 5항)

- 장외파생상품공동기금의 부족한 상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공동기금 적립시한을 “3영업일”에서 “1영업일”로 조정
  - 국제기준에서 공동기금 재산출시 당일 또는 적어도 익영업일 이내에 수수하도록 권고

#### 〈한국거래소 청산결제제도에서의 리스크 관리〉

- 청산결제제도에 있어 결제불이행에 대비한 결제이행재원 관리 중 회원은 공동기금을 부담
  - ▷ 결제이행재원의 종류에는 거래소가 CCP로서 부담하는 ‘결제적립금’이 있고, 회원이 부담하는 재원으로는 ‘증거금’(장내: 거래증거금, 장외: 청산증거금), ‘공동기금’(장내: 손해배상공동기금, 장외: 장외파생공동기금)등이 있음
- 회원 공동기금(장내: 손해배상공동기금, 장외: 장외파생공동기금)은 결제불이행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회원이 거래소에 적립하는 재원으로 ‘현금, 국채 및 통안채’로 납부
  - ▷ 공동기금은 2005년 거래소 설립 당시 증권·파생상품시장별 각 1천억원에서 2011년 각 2천억원으로 확충되었고, 2016년부터 ‘스트레스테스트(Stress-Test)’ 측정방식을 적용하여 2016년말 6,518억원 규모로 확충
  - ▷ 장내 결제회원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은 매분기별 Stress-Test 실시 결과 산출된 공동기금 적립액과 현재 적립액과의 차액(공동기금적립필요액)을 매분기의 20일 이내에 적립해야 하며, 장외파생공동기금은 매월 장내와 동일한 방식으로 공동기금적립필요액이 산출·부과되어 적립하도록 되어 있음

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f.re.kr)